##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11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 박범계·고용진·김경만

김민철 · 김성환 · 김홍걸

박영순 · 양정숙 · 이성만

이수진 · 이장섭 · 장철민

조승래 의원(13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는 첨단기술 사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 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유치할 수 있도 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 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 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첨단투자지구를 정의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제22조의6, 제22조의9).
- 나. 첨단투자를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 장·원천기술을 수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4).
- 다. 지정의 근거 및 요건·절차를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 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1)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지정근거 및 지정·입주요건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2조의6제1항·제5항).
  - 2)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에 대하여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의6제2항).
-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투자지구의 지정 고시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6제3항·제5항).
- 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제2항).

- 마.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기업의 유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내 입주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지 매입 후 임대 및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2) 입주 첨단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법령에 정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입주 첨단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2항·제8항).
  - 3) 첨단투자지구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제7항).
- 바. 첨단기술의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 거나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하는 투자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제8호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6부터 제2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 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이하 "첨단투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 2. 첨단투자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②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계획
-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그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첨단투자지구가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
- ⑤ 첨단투자지구의 신청과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첨단투자지구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로부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관 리주체 및 지구 내 기업체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

단투자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첨단산업 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2.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 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 지의 조성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있거나 첨단투자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

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제34조제2항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입분담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른다.
-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

- 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 증을 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
  - 2. 규제개혁,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첨단투자지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변경·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
- 3.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6. 첨단투자지구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후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적 사항
-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 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참석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 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u> </u>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의3. "첨단투자"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
	적으로 하거나 신성장・원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제8호
	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촉진
	하기 위해 제22조의6에 따라
/ )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투자 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첨단투자
	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
	<u>단투자지구(이하 "첨단투자지</u> 그"라 하다)로 기저한 스 이다
	<u>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1 게2즈게14호에 따르 사어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           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현 행	개 정 안
	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첨단투자 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
	<u>역</u>
	②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u>및 범위</u>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
	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00

현 행	개 정 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
	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
	<u>시하여야 한다.</u>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는 제2
	조제15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관리주체는 그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가 제2조제14
	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
	된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u>관리권자</u>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지정
	<u>된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u> ⑤ 첨단투자지구의 신청과 지
	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lt;신 설&gt;</u>	다. <u>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u>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의 변
	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
	용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정 아 혅 햀 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관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가 제22조의6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우 2.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 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의 사 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 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u>는 시·도</u>지사로부터 첨단투 자지구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현 행	개 정 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경우</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투자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
	고,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첨
	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지
	구 내 기업체 등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lt;신 설&gt;</u>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기반시설, 공동연
	<u>구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의</u>
	<u>설치 및 운영</u>
	2.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
	업센터의 설립_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구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 개발사업 1.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 기술 기상이 모든 산업기술 기상이 따른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현 행	개 정 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사업</u>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있거나 첨단투
	자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
	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 제40조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
	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
	기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및 「지
	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u>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u>
	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
	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
	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농지법」,「농지법」,「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립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제34조제2항과「국유재산법」,「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
그 테이팅(여 이대하 수 이다. 이	법」, 「농지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 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 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에 대 하여 제34조 제2항과 「국유재 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 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 다.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및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입분담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투자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 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 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첨단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 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1. 건정보증기급법 에 따른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       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       단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첨단투자지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
	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u>하는 사람이 된다.</u>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차관, 국토교통부차
	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
	2. 규제개혁, 첨단산업, 국가균
	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람</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현 행	개 정 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
	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위
	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u>기관 및 시·도의 소속 공무</u>
	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변
	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
	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현 행	개 정 안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첨단투자지구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7.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
	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
	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
	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위원회가 제2호 및 제4호의 업
	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첨단투
	<u>자지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한</u>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첨단
	투자지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u>한다.</u>
	1.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
	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후 신규

현 행	개 정 안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
	청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
	<u>적 사항</u>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
	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
	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
	의결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
	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 &lt;신 설&gt;</u>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
	•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
	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

혅 행 개 정 안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 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 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 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 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 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 청할 수 있다.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 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

현 행	개 정 안
	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
	단투자지구위원회에 참석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지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
	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
	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안건
	<u>을 상정할 수 있다.</u> ⑦ 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첨단기술

현 행	개 정 안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
	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u>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u>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
	전투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
	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
	해서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천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 참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
	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
	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
	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
	<u>할 수 있다.</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
	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

현 행	개 정 안
	<u>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